#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정진술, 채인묵,

최기찬, 김정환, 장상기,

박순규, 김화숙, 김제리

의원 (9명)

#### 1. 제안 이유

-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 조건의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이러한 외부회계감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함임.

-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범정부적인 국가기구가 구 성되는 등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며, 같은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경제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장의 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 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미세 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삭제 (안 제4 조)
- 나.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9조제6항)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정 혅 햀 개 아 제4조(외부회계감사)「주식회사 제4조(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서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보고하여야 한다.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의 책무) 제9조(시장의 책무)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신 설>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 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 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 다.